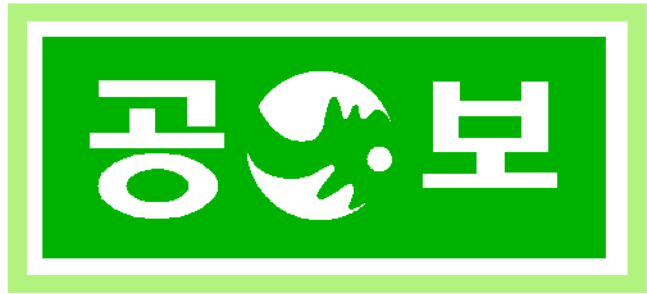
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기 관 의 장	기 관 의 장



제 725 호 2011. 12. 15(목)

## 조 례

○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626호[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] ..... 2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19-7207 행정7207)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윤종오



2011년 12월 15일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626호

**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**

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구청장”을 “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【별표】

## 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(제5조제1항 관련)

## 1. 수거식 화장실

부과기준	수 수 료	
	수집·운반	처 리
18리터	292원	「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

## 2.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

구 분	수 수 료	
	수집·운반	처 리
기본요금 (750리터까지)	16,630원	「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
초과요금 (100리터마다)	1,180원	「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

- ※ “수집·운반”은 분뇨의 수집·운반(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)수수료를 말한다.
- ※ “처리”는 분뇨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한다.
- ※ 수집·운반비 중 10원 미만은 실사한다.

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1. 개정이유

- 1991년 4월 23일 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 책정 이후 20년간 동건
- 최근 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물량의 급격한 감소로 대행업체의 경영난 가중
- 2010년 10월 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 조사·용역(시 일괄추진) 결과를 토대로 수수료 인상·조정 추진

2. 주요내용

- 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를 현수에 맞도록 조정 [별표]
- 가. 수거식 화장실(18리터) : 현행 177원 → 변경 292원
- 나.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
  - 기본요금(750리터까지) : 현행 11,045원 → 변경 16,630원
  - 초과요금(100리터마나) : 현행 772원 → 변경 1,180원